



스마트폰 수험총서

2026 농지법

- 고난도 문제 대비, 고득점용
-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종합 정리
- 2025년 포함 21년간 기출 지문 수록
- 1시간 완성



공부혁명
mbook.kr

도서명 : 농지법

ISBN : 979-11-7393-054-6

발간일 : 2025-11-11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5,500원



농지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농지의 소유(p11)

제3장 농지의 이용(p28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(p43)

제5장 보칙(p96)

제6장 벌칙(p104~111)

[비고]

하늘색은 21년간 (2005~25) 공인중개사

기출문제 지문

- 붉은색은 중복 출제문제 지문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, 보라색은 시행령, 갈색은
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
[약어 등]

경작은 농작물 경작

재배는 다년생식물 재배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
시, 군, 자치구

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

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www.mbook.kr)

제1장 총칙

1~5조

1. 목적

- 농지 소유/이용/보전 사항 정함
- 농지의 효율적 이용/관리
- 농업인 경영 안정, 농업 생산성 향상
- 농업 경쟁력 강화, 국민경제 균형 발전, 국토환경 보전

2. 정의

가. 농지

- 1) 전/답, 과수원과 법적 지목 불문 실제
- 경작지 또는 다음 다년생 식물 재배지
- 목초, 종묘, 인삼, 약초, 잔디, 조림용 묘목
 - 과수, 뽕나무, 유실수, 생육기간 2년 이상인 식물
 - 조경, 관상용 수목/묘목(단, 조경목적 식재 제외)
 - 다음은 제외
 - 전/답, 과수원아닌 토지로서 경작/재배 계속 기간 3년 미만
 -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(의제)없이 경작/재배 초지

2) 토지 개량시설 부지

- 유지, 양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
- 계단, 흙막이, 방풍림

3)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

-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
- 축사/곤충사육사와 부속시설
- 간이퇴비장
- 비주거 목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
-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
- 200톤 이하 간이액비저장조

나. **농업인**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

- 1천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/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
-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해 경작/재배
- 대가축 2, 중가축 10, 소가축 100, 가금 1천,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

다. 농업법인

- 영농조합법인
- 업무집행권자 중 1/3 이상이 농업인인

농업회사법인

라. 농업경영(이하 영농)

- 농업인/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영위

마. 자경

-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경작/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/재배
-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에서 경작/재배

바. 위탁경영

-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 보수 지급 약정, 농작업 전부/일부 위탁

사. 농지개량(25년 1월 시행)

-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행위
 -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획 정리, 개량시설 설치
 - 토양개량, 관개, 배수, 농업기계 이용 개선을 위해 객토, 성토, 절토, 암석 채굴
- 인근 농지의 관개, 배수, 통풍, 농작업에 영향없을 것

아. 농지의 전용(이하 전용)

- 농지를 경작/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

- (방풍림 등) 토지개량시설,
농축산물생산시설로 사용시 **제외**

자. 주말체험영농(이하 주말영농)

- 농업인이 아닌 **개인**이 주말 등을 이용해
취미/여가활동으로 경작/재배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www.mbook.kr)

제2장 농지의 소유

6~13조

1. 농지 소유 제한

가) 농지는 자기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

자가 아니면 소유못함

-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 영농에 이용 의무
- 예외) 학교/공공단체/연구기관 등, 주말영농

나) 다음은 **농지 소유 가능**, 취득시

농지취득자격증명(이하 **농취증**) 불요

- **국가/지자체**
- **상속**, 상속인에 한 유증
- **담보농지**(유동화전문회사등이

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)

- **(지방공사사장이 아니라)**

주무장관/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이하
장관)과 전용협의 마친 농지

- **(비교) 전용신고한 자는 농취증 필요**

-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공사)
-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
- 매립농지
- 토지수용
- 장관과 협의 마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
취득

다) 다음 취득시 농취증 불요

- 농업법인 합병
 - 공유 농지 분할
 - 시효 완성
 - 환매
 -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
- (비교) **주말영농은 농취증 필요**

- 라) 다음은 농지 소유 가능
- a) 주말영농하려고 진흥지역(내가 아니라)
외의 농지 소유
- b) 8년 이상 영농한 자가 이농 후 소유 농지
계속 소유
- c) 다음은 농지 소유 가능하고 농취증 신청시
영농계획서 작성 불요
- 학교, 공공단체, **농업연구기관**,
농업생산자단체, 종묘 등 농업 기자재 생산자
 - 전용허가(의제), **전용신고 농지**
 - 농지 개발사업지구내 1,500 미만인
 - 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농원부지,
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농지

- 농어촌정비법상 농지
- 진흥지역 밖의 평균경사율 15% 이상인 다음
요건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/군수가 고시한
영농여건불리농지
- 시/군의 읍/면 지역 농지
- 집단화된 농지 규모 2만 미만
- 시장/군수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정도, 농기계
이용 가능성, 영농 관행을 고려해 인정
- 계획관리/자연녹지 지역내 주공 소유 비축
필요 농지(농지 전용 전까지 공사에 지체없이
위탁)

마) 농지를 임대,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
동안 계속 소유 가능